

제 호

위험물 포장·용기검사기관 지정서

검사기관

명칭

주소

대표자

성명

주소

생년월일

전화번호

검사대상

검사항목

위 검사기관을 「항공안전법」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 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·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